

방재연구위원회 규정 및 회칙(변경)

다음은 點檢業務處理 細部 規程改正案 中
防災研究委員會(제22조)와 委員會構成(제23조)
이 아래와 같이 改正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防災
研究委員會 會則을 소개한다.

- ⑥ 심의위원은 안전의 심의와 의견권을 갖고며, 연구위원은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⑦ 분과위원장은 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.

第 5 章 防災研究委員會

- 第 22 條 (防災研究委員會)** ① 점검기준, 양식.
점검보고서 작성지침 및 점검업무 수행상 문제점 을 심의할 목적으로 협회내에 방재연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.
② 위원회에는 건축분과위원회, 위험물분과위원회, 가스분과위원회, 전기시설분과위원회, 경보설비분과위원회, 방폭설비분과위원회, 소화설비분과위원회, 방·배연설비분과위원회, 공정위험제1분과위원회, 공정위험제2분과위원회, 보험관제분과위원회 및 위험관리분과위원회를 둔다.
③ 기술계직원은 전항에서 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1개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
- 第 23 條 (委員會의 構成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(생략)
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과 연구위원으로 구분하며, 해당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선임한다.

第 24 條 (委員會의 會則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방재연구위원회 회칙

제정 1976. 7. 23.
개정 1977. 6. 1.
개정 1988. 9. 24.
개정 1990. 11.

제 1 조 (목적) 이 회칙은 점검업무처리세부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.)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방재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임원의 임무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, 부위원장은 보좌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.

제 3 조(심의사항) 규정 제22조 제1항의 위원회와 동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

심의 또는 연구한다.

- ① 점검기준의 재정, 개폐, 해석, 적용에 관한 사항
- ② 점검업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③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
- ④ 점검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
- ⑤ 기타,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제 5 조(안건의 상정) 전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상정여부는 위험관리부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.

제 6 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전조에 의하여 위원회 상정안건이 결정되면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를 한다.
② 전항의 통지는 회의일 3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7 조 (분과위원회의 소집) ① 제5조에 의하여 분과위원회 상정안건이 결정되면 위원회 간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소집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해 분과위원에게 소집통지를 한다.
② 전항의 통지는 회의일 1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8 조 (안건의 심의) 안건의 심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1차 심의로서 끝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경증과 내용에 따라 수개 분과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으며,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의결방법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

안전이나, 연구과제에 관한 결론 또는 건의는 당해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위원(분과위원회의 경우 심의 위원)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의결사항의 처리)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회의록(별첨양식)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위원회의 간사는 전항의 회의록을 부위원장, 위원장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위험관리부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.
③ 전항의 결재권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하거나 이의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.
④ 위험관리부장은 의결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회칙은 197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회칙시행과 동시에 기술연구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.
3. 이 회칙시행 이전에 기술연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방재연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198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. 이 회칙은 1990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.)